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2015. 12.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지원계획 개요 ····· 1

Ⅱ.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 2

Ⅲ.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7

Ⅳ. 세부 추진계획 ····· 9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 9

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 16

3.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지원기반 내실화 ····· 21

Ⅴ. 추진일정 ····· 26

Ⅰ. 지원계획 개요

□ 법적근거 및 기간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정 목적) 보안역량이 미흡하고 대기업과의 수·위탁 관계로 인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14.5.28 제정, '14.11.29 시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기간 : 2016년 ~ 2018년 (3개년)

□ 지원계획 주요내용 (동 법 제5조제3항)

○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원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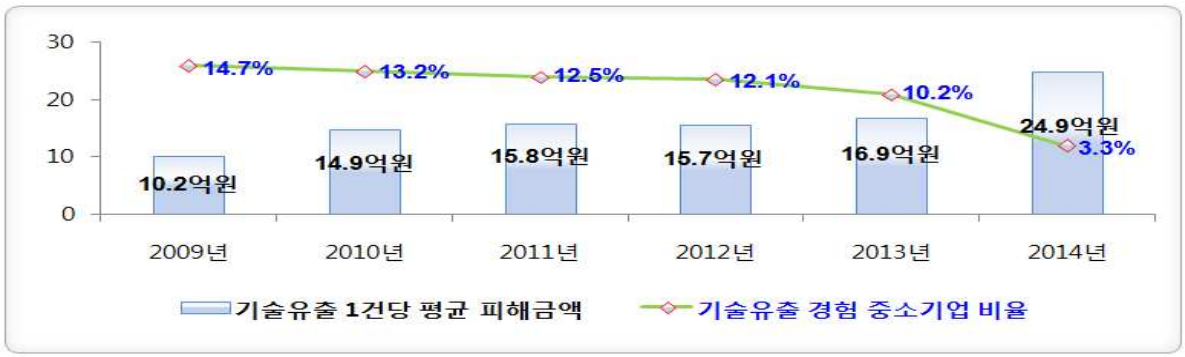
○ 향후 3년간('16~'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의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중기 전략**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종합 지원계획**

Ⅱ.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기술유출 동향

□ (국내 유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감소('09. 14.7% → '14. 3.3%)하고 있으나, **유출 건당 피해규모는 계속해서 증가**('09. 10.2억원 → '14. 24.9억원)



○ **(유출 관계자) 퇴직자 등** 기술 가치를 잘 알고 기술 접근권한이 있는 **기업 내부인력이 유출에 관여**

* 기술유출 관계자(%) : 퇴사자(58.6), 협력업체(15.5), 하도급업체(11.5), 현 직원(5.7)

○ **(유출 수단)** '복사 및 절취'(42.1%), '핵심인력 스카우트 또는 매수'(36.0%),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3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 유출)** 중소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및 현지 진출기업 유출도 심각

○ 최근 5년간('10~'14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중 6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국내기업에 비해 해외 진출기업의 유출이 빈번

* 해외 불법유출 현황(국정원) : 중소기업 64%, 대학·연구기관 등 20%, 대기업 16%

**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21.4%가 기술 유출을 경험(149개사 조사결과, 중기청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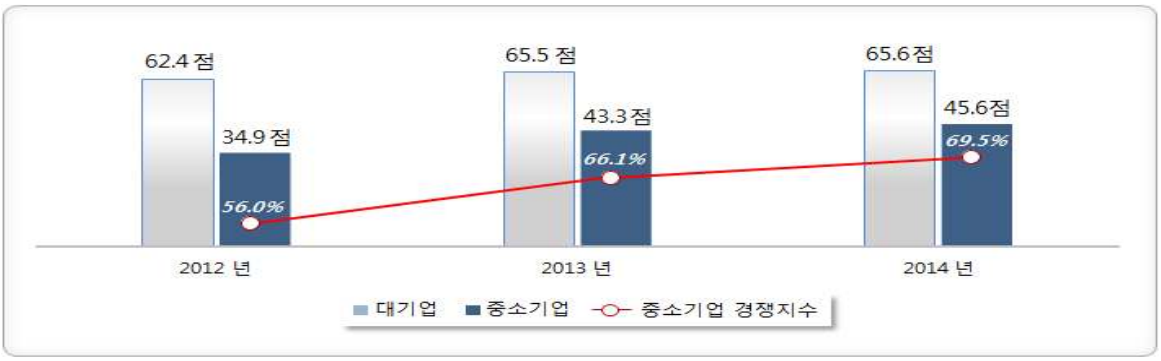
○ 향후 한·중 FTA 발효로 국내 상용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기업의 공세가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가 필요

▷ **내부인력에 대한 보안 강화** 및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이 시급**

2.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및 인식

□ **(기술보호 역량)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취약**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69.5% 수준에 불과**



- 특히 **중소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보호 역량이 미흡**

○ 중소기업 상당수가 보안인력 및 보안지식 부족에 따른 애로를 호소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애로사항 : 보안 전담인력 부족(41.0%), 보안 전문지식 부족(31.6%), 보안시설 부족(28.4%), 예산 부족(27.9%) 순 (중기청, '14년)

□ **(기술보호 인식)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유출 대응방안 수립 및 인력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

○ **(유출 원인) 보안관리·감독체계 미흡,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 등 기술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이 기술유출 사고를 초래

* 기술유출 원인 : '보안관리·감독체계 미흡'(56.4%), '임직원 보안의식 부족'(48.8%)

○ **(인력 관리)** 기술유출 상당수가 전·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보안서약서 징구가 미흡***

* 퇴사자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율 : 대기업 67.6%, 중소기업 47.2%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

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

□ **(유출 대응)** 기술이 유출된 **중소기업의 사후 대응이 미흡**

○ 상당수 기업이 신고나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고장 발송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

*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방법 : 미조치 31.1%, 경고장 발송 27.0% (특허청, '13년)

- 특히 대기업에 의해 유출을 겪은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 대응전략 부족 등으로 고발·소송을 하지 않는 경향

○ 기술유출이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조치가 미흡*하고, 기술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절차가 전혀 없는 기업도 30.2%에 이름

* 직원교육 및 보안관리를 강화한 기업은 각각 24.7%, 18.6%에 불과

□ **(피해 구제)** 기술유출 피해 구제수단인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한 기술 사용에 대한 정부 제재도 미흡**

○ 조정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조정 실적이 저조하고, 중소기업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큰 소송을 선호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95년 설치, '14) : 11건 조정(이중 2건 성립),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13.11 설치, '14) : 5건(모두 불성립),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15.1 설치, '15.9) : 6건(2건 불성립, 1건 취하, 3건 진행중)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었으나, 신고 취하, 제재요건 미충족 등으로 실제 제재실적은 많지 않음

* 기술유용 제재 도입('10) 이후 공정위 제재는 2건, 당사자간 보상 등으로 신고 취하 6건
** 기술유용에 대한 3배 손해배상 도입('11년) 이후 소송 제기사례는 아직 없음

▷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및 소송외 분쟁 해결 수단인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고,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감시·적발 체계를 개선**

4.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 **산업부(산업기술), 중기청(중소기업 기술 전반), 특허청(영업비밀)**이 소관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

*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중기청)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 산업부와 특허청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 구제, 보호기반 조성에 주력

○ 중기청은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 지원사업 현황(중기청) : ('05) 산업보안 교육 → ('08) 기술자료 임치 → ('09) 기술보호 상담 → ('11) 보안관제서비스 → ('13) 보안시스템 구축 → ('15.1) 기술분쟁 조정·중재위 설치

** 기술보호 예산 추이(중기청) : ('11) 26.6억원 → ('12) 37억원 → ('13) 55.3억원 → ('14) 65.7억원 → ('15) 96억원

□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간 업무협약* 체결**('14.12) 및 **산업보안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 추진

* 공정위, 경찰청, 중기청, 특허청 4개 기관이 상호 정보교류, 기술보호 협업 추진

** 국정원(간사), 산업부·중기청·특허청 등이 참석하여 정책 정보 공유(반기별 개최)

○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기술침해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유출 상담 → 수사 의뢰' 연계 체계 확립**

* 중기청-경찰청 간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0.7)

□ 부처별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을 시행 중이나, 기업 입장에선 **정부지원 창구의 분산**으로 정책의 **신속한 파악 및 활용이 곤란**

○ 그간 사업 공고, 보도자료 위주의 단편적 홍보에 치중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 인지도도 낮은 상황**(* 지원정책 인지도('14) : 24.5%)

▷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시급

참 고 **해외 기술보호 동향**

□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로 기업이 보유한 **주요 기술이 전략적 무기로 인식**되며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 **(미국)** 대통령실 산하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IPEC)에서 '영업기밀 유출방지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13.2)

* ① 영업기밀의 해외유출 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집중, ②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 촉진, ③ 법규의 집행·구속력 강화, ④ 법·제도 개선, ⑤ 대중의 인식 및 이해관계자 지원 강화

○ **(EU)** EU 차원의 영업비밀 보호기준 마련에 합의

- EU 국가중 스웨덴 만이 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보유하고 있어, EU 차원의 통일된 영업비밀 기준 마련을 위해 EU 영업비밀 지침 제정에 합의(EU이사회, '14)

○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

*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의결('15. 7)
- (개인) 1천만엔 → 2천만엔(해외유출시 3천만엔), (법인) 3억엔 → 5억엔(해외유출시 10억엔)

** 경제산업성이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기술정보의 합리적 보호·관리 수준을 제시('15.1)

□ 특히, 기업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업금지약정 확산 등 인력 보안관리가 강조**되는 추세

* (미국) '95~'09년간 州 법원에 제기된 영업비밀 소송의 77%에서 전·현직 직원이 영업비밀 침해에 가담, (유럽) 영업비밀 침해의 63.6%에 전·현직 직원이 관여 (EU위원회, 2012)

○ **(미국)** 4개 州*를 제외한 대다수 주에서 사용자의 보호이익, 제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술인력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인정

* 캘리포니아, 노스다코다, 콜로라도, 하와이州

○ **(유럽)** 경업금지 대가로 기술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

Ⅲ.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목표 기술보호 확산으로 안정적인 기술개발 기반 조성

핵심지표

	'14		'18(목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대기업의 69.5% 수준	⇨	80.0%
기술보호 지원자원 확충	中企 R&D예산의 0.8%	⇨	1.6%
기술보호 정책 인지도	24.5%	⇨	50%

추진방향

❖ (사전예방)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유출 예방에 중점
❖ (사후구제)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 분쟁 해결을 지원
❖ (인식제고) 교육 및 홍보 강화로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분 야	중점 추진과제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① 기술보호 상담·자문을 통한 애로 해결
	② 기술개발·보유사실 입증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 강화
	③ 전문보안서비스 및 보안설비 지원 강화
	④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⑤ 기술인력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차단
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①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② 기술침해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 및 전문인력 지원
	③ 기술침해 감시·적발체계 개선 및 기술유출 처벌 강화
3.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지원기반 내실화	①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② 기술보호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효율화

< 연도별 추진계획 >

분야	세부 내용	'16	'17	'18
기술 유출 사전 예방	기술보호 상담·자문 지원	600건	700건	800건
	법률 자문인력 확충	35명	60명	100명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강화	中企 R&D과제(중기청) 임치비율 제고	타부처 中企R&D과제 임치 확산	독립적 임치센터 확보
	기술지킴서비스(보안관제 등) 확대	6,000개사	6,500개사	7,000개사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43개사	70개사	100개사
	해외진출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100개사	200개사	300개사
기술 유출 사후 구제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기반 확충	수도권 지방법원의 법원연계 조정 참여	비수도권까지 법원연계 조정 확대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2기 출범
		사무국 설치 근거규정 마련(中企기술보호법 개정)	사무국 설치·운영을 통해 조정·중재지원 강화	
	조정·중재 법률지원 강화	30건	45건	70건
분위기 확산 및 지원 기반 내실화	중소기업 CEO 대상 기술보호 교육 확대	1,000명	1,500명	2,000명
	부처간 협업 강화	中企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中企기술보호센터')	中企기술보호센터 운영기반 강화(전문인력 보강 등)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충	中企 R&D예산(중기청)의 0.9%	1.2%	1.6%

❖ (기대효과)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예방 : ('14) 1.3조원 → ('18) 2.2조원 (69.2%↑)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현황 및 개선방안

< 현 황 >

◇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자문 인력이 부족**

◇ 개별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 국내기업에 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

◇ 기술유출 상당수가 내부인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보안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처벌 등 제재 위주로 운영

<개선방안>

◇ **전문가 pool 중 변호사 비중을 확대**하고 무료 법률자문을 강화

◇ 창업초기기업 등 **자체 보안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게는 기술지킴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 **자체 보안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보안설비 구축을 중점 지원**

◇ **해외진출 예정기업에 기술보호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旣 진출기업**은 현지 방문을 통한 **기술보호 취약점 진단**, **지재권 확보 및 분쟁대응을 지원**

◇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확산** 및 **적절한 보상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

그 동 안

-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지원**
- **국내기업의 기술보호에 주력**
-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

앞 으 로

- **기업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술인력에 대한 보호수단 강구**

1-1 기술보호 상담 · 자문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 해결 [중기청]

□ **기술보호(사전진단) 및 기술유출(사후지원) 상담·자문 제공**

○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취약점 진단 등 보안 컨설팅을 확대 ('15. 600건 → '18. 800건)

- (상담분야) 보안진단, 보안기술, 법률상담, 신고・수사

- (지원내용) 전문가 상담비용(최대 11일) 일부를 지원

  * 사전진단(1일)·보안교육(1일)은 전액, 심화진단(9일)은 65%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질의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확대**

○ 법무법인, '中企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위원(변호사・변리사) 등을 활용하여 무료 법률자문을 지원 ('15. 20건 → '18. 60건)

  * 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을 위해 법관, 변호사, 변리사,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15. 1월 설치)

□ **기술보호 전문가 풀(pool) 정비** 및 전문가 상담 수준 제고

○ **(Pool 정비)** 법률자문 강화를 위해 변호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존 전문가 Pool(213명)을 일제 정비 (법률 전문가 : '15. 35명 → '18. 100명)

- 지역별 변호사 확충, 전문가 Pool 제외기준 마련, 우수 컨설턴트 선정 등을 통해 전문가 Pool 관리를 강화

○ **(상담수준 제고)** 컨설팅 수행보고서 검토, 상담기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역량 및 컨설팅 수준을 지속 관리

1-2 기술의 개발 및 보유사실 입증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 강화 [중기청, 특허청]

□ 기술자료를 임치 센터에 등록·보관할 경우 임치한 기업의 개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운영기반 강화**

○ 임치센터(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 수용규모 다양화* 및 온라인 임치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 임치금고 크기를 다양화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임치물 수용 용량을 극대화
** 임치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활성화 등 이용 편의 및 보안성 강화

○ 다수 임치기업에 대한 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임치 활용을 확산

* 임치수수료(현행) : 신규임치시 30만원(최초 1년), 갱신시 15만원(1년 단위)

○ 현재의 임대공간 대신 독립적인 임치금고 설치공간을 확보하여 장기적·안정적인 임치제도 운영기반 구축

□ **정부 R&D지원 성과물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촉진**

○ 중기청 R&D 지원과제의 임치 이행비율 제고('14. 79.6% → '18. 95%)

○ 타 부처(미래부, 산업부 등)의 중소기업 R&D지원 성과물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성과물에 대한 임치제도 활용 확대

□ **임치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하여 임치제도의 저변 확대

○ 임치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치기술의 거래 및 사업화자금 대출을 연계(기보, 기은과 협업)

* 임치 기술에 대한 사업화자금 대출 연계 : ('15) 시범운영 → ('18) 30건

□ 영업비밀 원본의 보유 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간편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활성화**

○ **원본증명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70%, 3천원/건) ('15. 9,000건 → '18. 20,000건)

* (현행) 한국특허정보원(1곳) → (확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추가('16.1)

1-3 전문 보안서비스 및 보안설비 지원 강화 [중기청, 산업부]

□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발생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을 확대 ('15. 5,000개사 → '18. 7,000개사)

○ 중소기업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응함으로써 기업 피해를 최소화

* '11년에 산업기술보호협회에 구축, 보안관제 전문인력 13명 보유('15년 기준)

○ 보안역량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 및 기술유출 고위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서비스**를 고도화

* R&D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보유기업 등

** (현행) 보안관제, 내부직원 정보유출 방지, 악성코드 탐지
→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침해 등의 사전예측 기능 강화

□ 개별기업에 특화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

○ 중소기업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 진단 및 맞춤형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15. 43개사 → '18. 100개사)

- (지원내용) ① 네트워크·서버·PC 보안, 문서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대응 솔루션 지원, ② 출입관리 등 물리적 보안시설·장비 구축 지원

-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4천만원 한도)

□ **산업보안 분야 기술개발 지원 확대**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한 최신 보안기술 개발 투자 및 보급 확대

*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산업보안분야 기술개발사업 신설 검토

○ 보안기술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업보안 기술의 민간이전 확대

1-4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중기청, 특허청]

□ **해외진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사전교육 실시**

○ 수출BI 입주 예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출국의 기술보호 관련 법령, 기술유출 사례, 유출시 대응방안 등 교육을 확대('15. 80명 → '18. 150명)

○ 국내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별로 기술보호 매뉴얼을 제작·보급

□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

○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기술보호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현지 방문을 통한 상담 지원(연 50개사)

○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에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Q&A 코너 신설 및 온라인 상담을 지원

□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보호 애로를 해소**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상표·디자인 출원,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특허·상표 침해조사 소요비용을 지원(50~70%)

* IP-DESK 설치 지역 : 중국(5), 미국(2), 태국(1), 베트남(1), 독일(1), 일본(1) 등 11개소

○ **IP-DESK 미설치 지역**은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침해조사 소요비용 지원****

* 분쟁예방 법률자문은 소요비용의 50%(최대 $1,000), 분쟁대응은 70%(최대 $2,500) 지원

** 해외 모조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소요비용의 70%(최대 $10,000) 지원

○ 특히 한·중 FTA 타결로 중국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의 선제적인 지재권 관리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

*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발간(특허청, '15.8),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특허청·관세청, '15.8)

1-5 핵심 기술인력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차단 [공정위, 특허청, 중기청]

□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완화

○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이 불공정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위법성 판단기준이 엄격하여 처벌이 어려운 구조

* 다른 사업자의 기술 또는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채용하여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8호 '가', '나')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을 완화 **('15. 4/4분기)**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개정 대상**

◇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내용) ① (현재) '부도발생 우려' → (개정) **'부도발생 우려' 삭제**
② (현재)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 → (개선) **'상당히'** 곤란

□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도록 하여 기술인력의 잠재적 유출 심리를 억제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업의 **비밀관리 노력을 지원**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가능

** **영업비밀 성립요건**(부경법 제2조)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영업비밀 보호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역량을 향상

*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 ('15) 70개사 → ('18) 150개사

□ **중소기업과 핵심 기술인력간 경업금지 약정** 등을 통해 비밀유지 의무 부과 및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최소화

○ 퇴사 후 일정기간 영업비밀 누설, 경쟁업체 취업, 유사·동종업체 창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 표준모델*' 활용을 독려**

***** 법원의 경업금지 제한 인정기간(1~3년),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합당한 대가 지급 등 합리적·구체적 제한요건 제시 (특허청, '14)

○ 개별 기업의 경업금지약정(안)에 대해 전문가 진단·보완을 지원

□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장기 재직을 유도

○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재직시 기업과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 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확대**

* 가입자수 : ('15) 10,000명 → ('18) 43,790명(누적)

**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연계 혜택 부여

※ 내일채움공제사업 개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 '14. 8월 개시)

- **(가입대상)** 중소기업 + 근로자(핵심인력)
  * 핵심인력 : 기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 근로자
-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 **(납입비율)**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

○ **직무발명 보상제도* 내실화**를 통해 기술인력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확산

* 종업원이 직무상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및 소유하고, 종업원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 기업규모·업종별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정립,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 감면 등) 지속 확대

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현황 및 개선방안

< 현 황 >

◇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기업 활용 및 인지도가 미흡**

◇ **조정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정 비용에 국한**

◇ 기술자료 유용행위 **제보자의 신분노출 우려** 및 제보시 **경제적 보상 부재**

< 개선방안 >

◇ **관계부처·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정·중재 수요를 적극 발굴**

◇ **조정 신청·진행단계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 중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 하도급 거래관계의 기술침해에 대한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및 기술유용행위 제보자에 **신고 포상금 지급 등 기술침해 감시·적발체계 개선**

그 동 안

- **분쟁 해결수단으로 소송에 의존**
- **조정·중재수요 발굴을 위해 홍보에 주력**
- **기술유용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 및 보상 미흡**

앞 으 로

- **조정을 통한 원만한 타협을 유도**
-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정·중재수요 적극 발굴**
- **신고자 보호 및 경제적 보상 개시**

2-1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중기청, 공정위]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

< 조정 vs. 중재 >

구분	조 정	중 재
특징	분쟁의 양 당사자가 제3자의 조정안을 승낙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속	제3자의 판단 자체가 분쟁의 양 당사자에 법적 구속력을 가짐
효력	재판상 '화해' 효력	재판상 '확정판결' 효력

○ **(분쟁조정)** 3~5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3개월 이내 완료
(* 조정부의 장 : 위원 중 변호사 또는 변리사)

○ **(분쟁중재)** 3~5명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여 5개월 이내 완료
(* 중재부의 장 : 위원 중 법관 또는 변호사)

□ **관계부처·기관간 협력을 통해 조정·중재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

○ **법원 연계 조정기관 지정**을 위해 **서울지법과 업무협약 체결 추진**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우선 추진('15.4/4분기) 후, 타 지방법원으로 확대

○ **조정·중재 대상에 핵심 기술인력 유출로 인한 분쟁을 포함**

* 법무법인 자문결과('15.7월) : 핵심기술을 숙지하고 있는 직원이 타 회사로 이직하여 핵심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부서에 근무 중일 경우 조정 대상에 해당됨

○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에서 기술분쟁 발생시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활용토록 **관련 표준계약서에 반영**

* 표준하도급계약서 반영현황 : 9개 업종에 旣 반영('14.12), 나머지 업종도 반영 추진 (공정위 협조)

○ **기술분쟁 조정·중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속·저렴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중재에 대한 인지도 제고

*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중소기업 CEO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도 소개 등

□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기술 전문성 강화 및 법률 지원 확대를 통해 조정 성립율을 제고**

○ 다양한 기술 분야의 분쟁 발생 소지를 감안하여 위원회 위원 외에 별도의 **기술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참고인 등으로 활용

- 기술 전문가가 분쟁 대상인 기술자료의 상세 분석 결과를 당사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제고

* (현행) 변리사를 포함한 기술분야 위원 18명
→ (개선) 위원과 별개로 분야별 기술자문단(100명 이내) 구성

○ 당사자간 합리적인 조정·중재 유도를 위한 **법률 지원 확대**

- **조정 신청기업에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

* (현재) 조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무료 법률자문 지원
→ (확대) 무료 법률자문 + 조정·중재시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5백만원 한도)

- **조정 불성립 후 소송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소송비용 지원**

* 상대기업의 소극적 대응으로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소송비용 50% 지원(최대 1천만원)

< 기술분쟁 조정·중재 수요 확보 및 지원 강화 >

조정·중재 수요 발굴	조정·중재 신청·진행단계	조정절차 완료 후
• 법원연계 조정 참여 • 표준하도급계약서 內 조정 활용조항 반영	• 법률자문 강화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단,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추진(中企기술보호법 개정)

○ 분쟁 사건에 대한 자료조사·분석 등 위원회의 조정·중재 지원 기능을 강화

* 사무국 설치 등 조정·중재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16)

2-2 기술침해 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 및 전문인력 지원 [특허청]

□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에 소송비용 및 법률자문 지원**

○ 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에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

* 건당 500만원 이하 (단, 대기업과 분쟁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특허 심판 및 특허법원 소송을 진행시 특허상담센터에 소속된 전문가가 **무료로 심판 및 소송을 대리**

* (대리업무)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 서류 작성(청구서, 답변서, 소장 등), 특허심판원 및 법원 요청시 기술설명회 실시, 변론 참석 등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분쟁 해결 지원**

○ 원활한 수사·소송진행을 위해 **외국기업·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건**은 **영업비밀보호센터 소속 변호사**가 **직접 컨설팅 실시**

○ **영업비밀 전문 민간변호사** 중심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활용하여 피해기업의 초동 대응을 위한 **기초적 법률 상담** 지원 ('15. 20건 → '18. 40건)

* (지원내용) 부경법 적용 가능여부, 법률검토에 필요한 자료목록, 소송비용 견적 등

□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재권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

* (지원내용) 보험료의 70%(최대 30백만원) 지원, (보장내용) 소 제기, 피소 대응 등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상(최대 5억원), (보장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 지재권 소송보험의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입기업 확대**('15. 120개사 → '16. 160개사) **및 보험상품 다양화*** 추진

* 단체 가입형 IP 소송보험 출시·운영

○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소송보험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추진

2-3 기술침해 감시·적발 체계 개선 및 기술유출 처벌 강화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 대기업(원사업자)의 기술침해에 대한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15.3~)

* 제보자의 IP 주소 및 신원을 수집하지 않고, 제보에 따른 조사대상·시기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피제보자에 의한 신원 추정 방지

□ 기술유용 행위 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

○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내부자의 구체적 제보 등 감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급법 시행, '16.1)

□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 **관계부처간 감시 네트워크*** 및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의 부당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

* 공정위·중기청·특허청·경찰청 간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MOU 체결('14.12)

**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유용 설문항목을 구체화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연 1회)

○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술 유용의 경우 **5억원 이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 양형 강화 필요성,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에 양형기준 상향 요청

3.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지원기반 내실화

현황 및 개선방안

< 현 황 >

◇ **사업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위주의 홍보**에 치중하여 사업 인지도가 낮음

◇ 기술보호 추진여부는 중소기업 CEO의 의지가 중요함에도 **그간 보안담당자 위주의 기술보호 실무교육에 주력**

◇ 기술유형에 따라 **기술보호 상담창구가 분산**되어 중소기업의 혼선 초래

◇ 기술개발에 비해 **기술보호 지원은 소홀** (* 中企 R&D지원예산의 1% 미만)

< 개선방안 >

◇ **홍보 대상별로 홍보방식을 차별화**하고 **현장소통을 강화**

◇ **중소기업 CEO 대상**의 기술보호 **인식제고 교육을 중점 추진**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보호 **상담창구를 '中企기술보호센터'로 일원화**

◇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 (* 中企 R&D지원예산의 1.6% 수준까지 확대)

그 동 안

-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단편적 홍보**
- **기업 보안담당자 실무교육**에 주력
- 기술유형에 따라 부처별로 기술유출 **상담창구 별도 운영**
- 기술개발 위주 정책으로 **기술보호 지원에 소홀**

앞 으 로

- 홍보대상별 **홍보방식 다각화 및 현장소통 강화**
- **中企 CEO의 인식제고 교육** 강화
-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상담창구 일원화**
-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 추진**

3-1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중기청, 산업부,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 대상별 맞춤형 홍보 추진

○ **(일반국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상영** 및 **기술보호 공모전 개최**

* 지원사례 중심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KTX·케이블방송 등에 방영
** 기술보호 정책홍보 디자인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중소기업) 언론사와 공동기획 추진, 기업 CEO 대상 홍보 강화**

* 주요 일간지·경제지와 연계하여 기획기사 진행(연 1~2회)
**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지방청 간담회 개최

○ **(대기업)** 대기업 협력사의 기술보호 확산을 위해 **대기업 대상 행사*시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홍보**

*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 평가 관련 설명회, 동반성장/성과공유 아카데미 등

□ 찾아가는 중소기업 현장홍보 강화

○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권역별로 **기술보호 정책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시책 소개 및 전문가 상담부스 운영 (반기별)

○ **중소기업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기관, 지자체, 지방중기청 등을 통해 정책 안내자료 배포

□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및 기술보호 포럼 개최**(연 1회)

○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기술보호 주요 이슈 공유 및 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사항 논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3-2 기술보호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중기청]

□ **교육 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방식을 차별화**하여 교육효과 제고

○ **(중소기업 CEO)** 유출사례, 피해현황 소개 등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주력

* 중기중앙회, 중진공 및 중소기업 협·단체의 CEO 교육과정 활용, 지방중기청을 통한 지역별 CEO 간담회 개최, 대학 CEO 교육과정에 기술보호 특강 개설

** 카이스트, 특허법원 등과 공동으로 CEO 대상 기술보호 교육과정 운영('16. 2개 과정)

○ **(재직자·전문가)** 보안기술 및 기업 내부 보안체계 수립, 관련 법령 및 판례, 유출시 대응방안, 정부시책 등 **실무 위주 정보 제공**

○ **(법조인)** 사법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조인의 **인식제고** 교육 추진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상시적 교육여건 조성**

○ **다양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상시 교육기회 제공

*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교육과정에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

○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호지침 수립·보급**

*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대한 자가진단 방법 및 주요 상황별 기술보호 수칙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CEO 교육 및 홍보 등에 중점 활용

□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인력을 양성**

○ **산업보안 분야 특성화대학(학사과정)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발굴·양성

* ('15.하반기) 2개 대학 → ('18) 5개 대학

○ 벤처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中企중앙회 등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3-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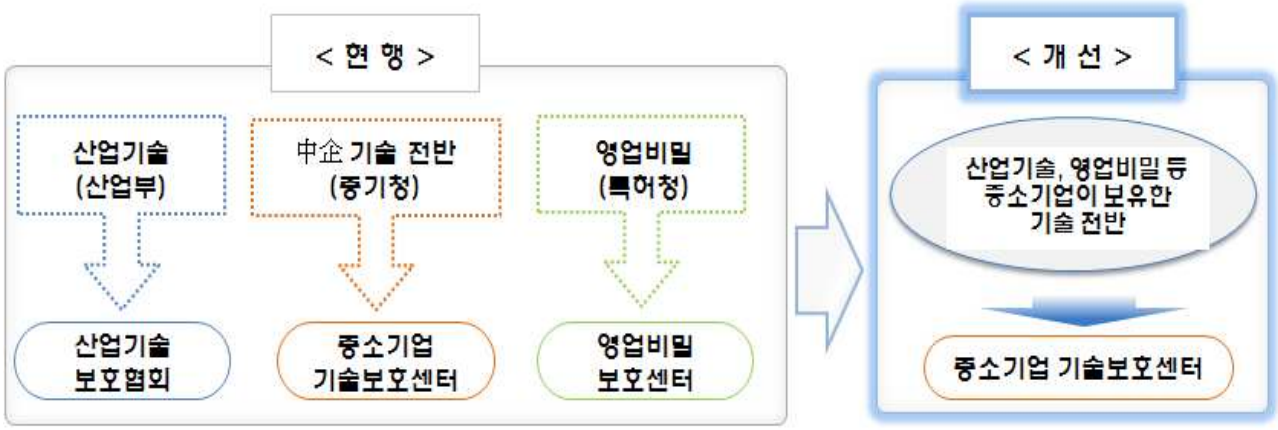
[산업부,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경찰청]

□ 기술유출 상담 통합창구 신설 등 부처간 협업 강화

○ 기술 유형(산업기술, 영업비밀, 기술 전반)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보호 상담창구를 '中企기술보호센터'*(중기청)로 일원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설치·운영 중('15.1.22~)
- 기술보호센터에서 우선 상담 후 필요시 소관 부처로 연계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상담 창구 >



○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업 활성화

* 협업 근거 :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교류 및 협조 등에 관한 업무협약' (공정위·경찰청·중기청·특허청, '14. 12.18)

- 중기청·특허청에 접수된 기술유출 의심사례를 공정위·경찰청이 신속히 조사·수사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 교류를 강화

< 기관간 정보교류 강화 >



-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공동 캠페인 추진 등 대국민 홍보시 상호 협력

□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정보 활용을 촉진

○ **(공급자 측면) '기술보호 울타리'** (www.ultari.go.kr)를 통해 현행 기관별* 정보 외에 **분야별 정보(상담, 신고, 분쟁조정 등)를 추가로 제공**

* 경찰청, 산업부, 무역위, 공정위, 국정원, 특허청, 산업기술보호협회 등

< '기술보호 울타리' 개편 (예시) >

< 현 재 >



⇒

< 개 선 >



○ **(수요자 측면)** 개별 기업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범부처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안내 튜토리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콘텐츠(예시)

- (1단계) "기술·영업비밀이 유출되었습니까?" → (2단계) "네"일 경우, '수사 지원,' '상담,' '분쟁 조정' 중 선택 → (3단계) "상담" 클릭시, 유출된 기술의 종류 선택(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기타 기술) → (4단계) 기술 종류에 따른 부처별 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의 1% 미만인 **기술보호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 확보**('14. 0.8% → '18. 1.6%)**

* 中企 R&D예산 대비 기술보호 예산 비중(중기청) : ('14) 0.8% → ('15) 1.1% → ('16안) 0.9%

Ⅴ. 추진 일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추진 일정	추진부처 (협조부처)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① 기술보호 상담·자문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 해결**		
	-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상담·자문 제공	'16.1 ~	중기청
	- 기술유출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 확대	'16.1 ~	중기청
	- 기술보호 전문가 풀 정비 및 상담수준 제고	'16.1 ~	중기청
	② 핵심기술 개발 및 보유사실 입증을 통한 기술 유출 예방 강화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기반 강화	'16.상~	중기청
	- R&D지원 성과물의 기술임치 활용 촉진	'16.상~	중기청(미래부, 산업부)
	- 임치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6.1 ~	중기청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활성화	'16.상~	특허청(중기청)
	③ 전문 보안서비스 및 보안설비 지원 강화		
	-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확대	'16.1 ~	중기청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16.1 ~	중기청
	- 산업기술 분야 기술개발 지원 확대	'16.상~	산업부
	④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내실화		
	- 해외진출 예정기업 기술보호 교육 실시	'16.상~	중기청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상담 지원 강화	'16.상~	중기청
	- 현지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보호 애로 해소	'16.상~	특허청
	⑤ 핵심 기술인력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차단		
	- 기술인력 부당 이용·채용의 위법성 기준 완화 적용	'16.상~	공정위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	'16.상~	특허청
	- 경업금지약정 활용 확산	'16.상~	특허청(중기청)
	-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대	'16.1 ~	중기청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지원	'16.상~	특허청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추진 일정	추진부처 (협조부처)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①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 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	'16.1 ~	중기청
	- 조정·중재 수요 발굴을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	'16.상~	중기청(공정위)
	- 조정·중재위 전문성 강화 및 법률지원 확대	'16.상~	중기청
	- 기술분쟁 조정·중재위 사무국 설치 추진	'16.상~	중기청
	② 기술침해 소송시 소송비용 및 전문인력 지원		
	- 중소기업에 소송비용 및 공익변리사 지원	'16.상~	특허청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분쟁 해결 지원	'16.상~	특허청
	-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16.상~	특허청
	③ 기술침해 감시·적발 개선 및 기술유출 처벌 강화		
	- 기술유용에 대한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16.1 ~	공정위
	- 기술유용 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16.1~	공정위
	- 기술유용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16.상~	공정위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 상향 추진	'16.상~	산업부(특허청)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지원기반 내실화	**①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대상별 맞춤형 홍보 추진	'16.상~	중기청
	- 찾아가는 중소기업 현장홍보 강화	'16.상~	중기청(산업부, 특허청,경찰청,공정위)
	- 기술보호 컨퍼런스 및 포럼 개최	'16.하~	중기청
	② 기술보호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및 방식 차별화	'16.상~	중기청
	- 온라인 교육 신설 및 기술보호지침 수립·보급	'16.상~	중기청
	-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16.상~	산업부, 중기청
	③ 기술보호 지원체계 효율화		
	- 기술유출 상담 통합창구 신설 등 협업 강화	'16.상~	중기청(산업부, 특허청,경찰청,공정위)
	- 기술보호 정책정보 통합 제공	'16.1 ~	중기청, 특허청